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6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정희용·김선교·김종양

우재준・강대식・강승규

김승수 · 신성범 · 송언석

유상범 • 주호영 • 조지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나,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실제 거소투표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157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7조제6항 중 "視覺 또는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擧人"을 "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또는 중증장애인인 선거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	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		
차) ① ~ ⑤ (생 략)	차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		
⑥ 選舉人은 投票所의 秩序를	6		
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			
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			
께 투표소(초등학생인 어린이			
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			
다)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, 視	, <u>시</u>		
覺 또는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	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		
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擧人	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		
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	또는 중증장애인인 선거인		
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			
조하게 할 수 있다.			
	.		
⑦ ・ ⑧ (생 략)	⑦ · ⑧ (현행과 같음)		